

진도군 공고 제2022-718호

제28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8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진 도 군



1. 제28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8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각 1부.

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66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정비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8209(2022.7.13.) 주민투표법 개정에 관한 참고조례안 송부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및 별지 개정)
 -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해당 규정 및 별지 서식 개정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관련 제5조제1항)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법(관련 제7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해당 규정 삭제
- 정보시스템^{주민e직접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법(관련 제10조, 제12조)에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안 제10조제1항 개정

-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내용 반영(안 제8조 및 별지 개정)
 -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안 제8조제2항 개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읍·면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 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음

6. 입법예고: 2022. 7. 20. ~ 8. 9.(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붙임(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2. 9. 13. 원안가결

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 중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0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 |
| 서명요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 | |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p> | | | |
|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또는 날 인 | 서명자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이 의 신 청 서 | | | |
|--|----|-----------|------|
|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 상 | | | |
| 신 청 취 지 | | | |
| 신 청 사 유 | | | |
|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150px;">귀하</p> | | | |
|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p>제2조(군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외국인</u> ----- ----- ----- ----- -----.</p> |
|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u>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u> ----- ----- ----- ----- ----- <u>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u></p> |
|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② (생략)</p> <p>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p> <p>1. <u>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p> <p>2. <u>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u></p> <p>3. <u>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4. <u>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⑤ (생략)</p> |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u>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p> <p>2. <u>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u></p> <p>3. <u>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4. <u>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삭제></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u>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게시판·새진도소식지 중 하나 이상과 진도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 <p>제18조(공표방법 등) ----- ----- ----- ----- ----- <u>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u>----- ----- -----.</p> |

진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67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포상 조례 중 부상에 관한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벗어나지 않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군 포상 조례중 부상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8조)
 - 각종 행사 시에 관련분야 유공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표창장과 함께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으나, 꽃다발 증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일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기 위함
 - ※ 꽃다발을 전수하여 지역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개정안: 붙임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2022. 5. 18. ~ 6.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2. 9. 1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포상자는 상금, 상패,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u></p> | <p>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u></p> |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68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 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인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삭제 및 지급방법 등 변경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안 제3조)
 - 당초: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제3조)
 - 변경: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사업 (안 제4조)
 - 당초 명예수당 70,000원 → 변경 120,000원(5만원 인상)
 - ☞ '23. 1. 1.부터 인상안 적용
- 지급방법 및 시기 (안 제5조제 1항, 제2항)
 - 지급방법 변경
 - 당초: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
 - 변경: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 명예수당 지급 시기 변경
 - 당초: 매분기 마지막달 20일 지급
 - 변경: 매월 20일 지급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8. 9. ~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9. 14. 원안가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사망 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을 “주소를 둔”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7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매분기 마지막달”을 “매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발생한”을 “발생한 날이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년 매분기”를 “매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호의 규정 명예수당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u>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사망 위로 금은 연령제한 없음)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u></p> <p>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p> <p>1. 월 <u>7만원</u>의 명예수당 지급 2. 3. (생략)</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단체를 경유하여 신청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단체장은 신청자 본</u></p> | <p>제3조(지원대상) ----- ----- <u>주소를 둔</u> ----- ----- ----- ----- ----- ----- ----- ----- ----- -----</p> <p>제4조(지원사업) ----- ----- ----- ----- ----- ----- ----- ----- ----- ----- -----</p> <p>1. -- <u>12만원</u>----- 2.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삭제></p> |

인이 작성 제출한 신청서를 일
괄 제출할 수 있다.

② 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
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
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
호서식의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
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
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
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① ----- 매월 --

-----.

② -----

----- 발생한 날이 속하는 -----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
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
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 별지서식-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69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인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 삭제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안 제11조)
 - 당초: 지급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제1항)
 - 변경: 지급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 제1항 제1호 ~ 제11호까지 단체명 삽입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3항)
- 명예수당 등 지급 (안 제12조)
 - 당초 명예수당 50,000원 → 변경 70,000원(2만원 인상)
 - ☞ '23. 1. 1.부터 인상안 적용
- 신청서 등 누락 된 서식 추가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8. 9. ~ 29.(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9. 14. 원안가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상 주소”를 “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전몰군경유족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전몰군경미망인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전상군경)의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을 “사람(공상군경)과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보국수훈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관계법령”을 “관계법령”으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제12조제1항 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 규정 명예수당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안내】

진도군에서는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신청서상의 개인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① 진도군에서는 지원대상자 자격확인 및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② 지원대상자의 정보(주소, 이름, 보훈번호, 전화번호,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등)를 수집하여,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① 지원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관련문서 보존기간(5년) 동안 보유한 후, 폐기처분되며,
- ② 내부자료에 이기되어 지급근거 자료로 사용 중인 정보는 자격상실 후, 5년 경과 후 폐기됨.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 : 지원신청서 접수 · 등록 불가

※ 보훈명예수당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관련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동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 _____ (서명)

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70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시행 2022. 3. 1.)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안 제2조)
 -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2. 5. 31. ~ 6. 2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8. 10. 원안가결

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

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 구 분 | 산정방식(단위 : 연간) |
|--|--|
| <p>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 시설)·소형선 부두(아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p>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p> <p>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
| <p>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p> |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p> |
| <p>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p> | <p>가. 전기사업용수 m³/초당 연액 20만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p> |

| | |
|---|---|
|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 <p>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전라남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
|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
| <p>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p> |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

| | |
|---|--|
| 7. 「광업법」 및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
|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진도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전라남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²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도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71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2022. 5. 19.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범위 개정(안 제4조)
현행) 진도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정)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8. 10. ~ 8. 30.(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9. 13. 원안의결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u></p> <p><u>1. 진도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u> <u>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u></p> <p><u>2.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u></p> | <p><u>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u></p> <p><u>1. 삭제</u></p> <p><u>2. 삭제</u></p> |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
|----------|---------|
| 의안 번호 | 2022-72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

2. 의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2021 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의 결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684,887,017,981원
- 수납액 : 695,649,900,037원

○ 세 출

- 예산현액 : 684,887,017,981원
- 지출액 : 493,009,916,222원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202,639,983,815원
- 이월액 : 151,869,507,499원
 - 명시이월 : 115,179,832,909원
 - 사고이월 : 36,689,674,590원
- 보조금집행잔액 : 7,914,739,557원
- 순세계잉여금 : 42,855,736,759원

2. 예비비 결산

- 예비비 예산액 : 5,899,100,000원
- 지출결정액 : 5,252,398,000원
- 지출액 : 4,289,705,410원
- 이월액 : 449,549,300원
- 잔액 : 513,143,290원

3. 기금 결산

- 전년도말 조성액 : 83,513,732,399원
- 당해년도 조성액 : 4,261,578,282원
- 당해년도 사용액 : 68,426,261,080원
- 당년도말 조성액 : 19,349,049,601원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 권 액 : 3,743,896,652원
- 채 무 액 : 83,600,000원
 - 일반회계 차입금 : 83,600,000원

5. 재산 결산

- 재 산 액 : 399,956,323,725원
 - 행정재산 : 371,037,612,306원
 - 일반재산 : 28,918,711,419원

6.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세입세출외현금 : 3,272,528,555원
 - 보 증 금 : 495,557,610원
 - 보 관 금 : 2,761,332,620원
 - 기 타 : 15,638,325원

7. 우리군의 재정현황(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총 자 산 : 2,195,850,831,930원
 - 총 부 채 : 16,191,360,561원
 - 순 자 산 : 2,179,659,471,369원
- 재정운영
 - 수 익 : 474,442,819,805원
 - 비 용 : 420,090,650,683원
 - 운 영 차 액 : 54,352,169,122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공원)]

| | |
|----------|---------|
| 의안 번호 | 2022-73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다도해 자연경관과 주변 자원을 연계한 관광편의시설 조성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 도모

나. 계획의 범위

- 위치 :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산2-3번지 일원
- 대상 : 군계획시설(문화공원 1개소) 신설
 - 공 원 : A=6,614m²

다. 주요내용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A | 공원 | 문화공원 | 진도읍 산월리 산2-3번지 일원 | - | 증)6,614 | 6,614 | | |

3. 추진경과 및 계획

- 2022. 06. 15. ~ 06. 30. : 주민 의견 청취
- 2022. 09.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2. 10. : 진도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가. 현황분석

- 진도읍 산월리 산2-3번지 일원의 공원 결정 예정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화경관지구로지방도 803호선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음

나. 변경(안)

-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A | 공원 | 문화공원 | 진도읍 산월리 산2-3번지 일원 | - | 증)6,614 | 6,61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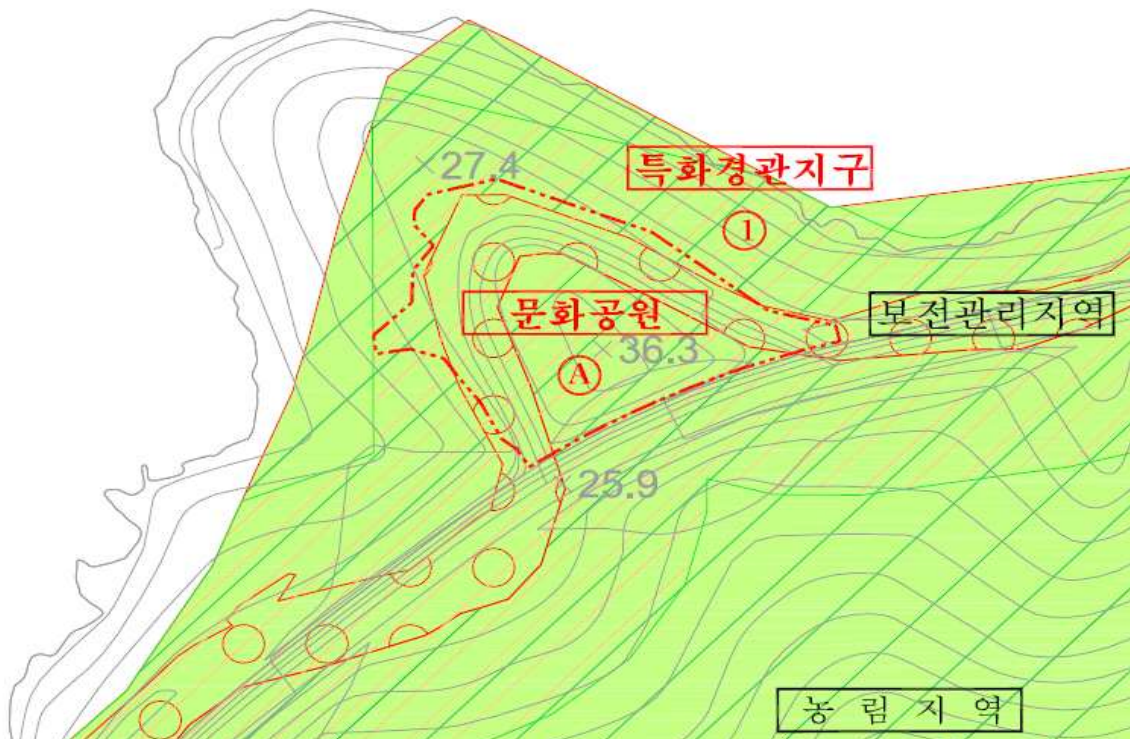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A | 공원 | ○ 문화공원 신설 A=6,614m ² | ○ 다도해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6. 위치도 및 도면

위치도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세방낙조 관광명소화사업(공원)]

| | |
|----------|---------|
| 의안 번호 | 2022-74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서남해안 일몰의 관광명소인 세방낙조를 차별화된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
- 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 도모

나. 계획의 범위

- 위 치 :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415번지 일원
- 대 상 : 군계획시설(문화공원 1개소) 신설
 - 공 원 : A=29,717m²

다. 주요내용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A | 공원 | 문화공원 | 지산면 가학리 415번지 일원 | - | 증)29,717 | 29,717 | | |

3. 추진경과 및 계획

- 2022. 08. 31. ~ 09. 14. : 주민 의견 청취
- 2022. 09.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2. 10. : 진도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가. 현황분석

- 지산면 가학리 415번지 일원의 공원 결정 예정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기상대가 선정한 제일의 낙조 전망지인 세방낙조 일원으로 연계개발을 위한 접근성이 높음

나. 변경(안)

-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A | 공원 | 문화공원 | 지산면 가학리 415번지 일원 | - | 증)29,717 | 29,717 | | |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A | 공원 | ○ 문화공원 신설 A=29,717m ² | ○ 세방낙조 일원에 지역의 문화자원 및 역사자원을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공간조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화 및 관광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 |

6. 위치도 및 도면

위치도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진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 |
|----------|---------|
| 의안 번호 | 2022-75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진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및 방재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자연재해예방사업 계획수립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 전체 : 440.12km²(1읍 6면)
 - 하천연장 : 179.30km(지방하천 22개소, 소하천 58개소)
 - 해안선 : 583.0km
- 시간적 범위 : 수립년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 과업대상 : 9개 재해유형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대설재해, 가뭄재해, 기타재해

다. 활용방안

○ 재해예방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군 방재예산을 고려 목표년도(10년)내 저감대책 시행이 가능한 지구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정비 계획 수립

3. 추진경과 및 계획

- 2020. 11 ~ 2021. 08. : 기초조사,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실시
- 2021. 09 ~ 2022. 08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2022. 09 : 군의회 의견청취
- 2022. 10 : 주민공청회 및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심의 후 공고

4.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 등)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가.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 예비후보지 대상 1,775개소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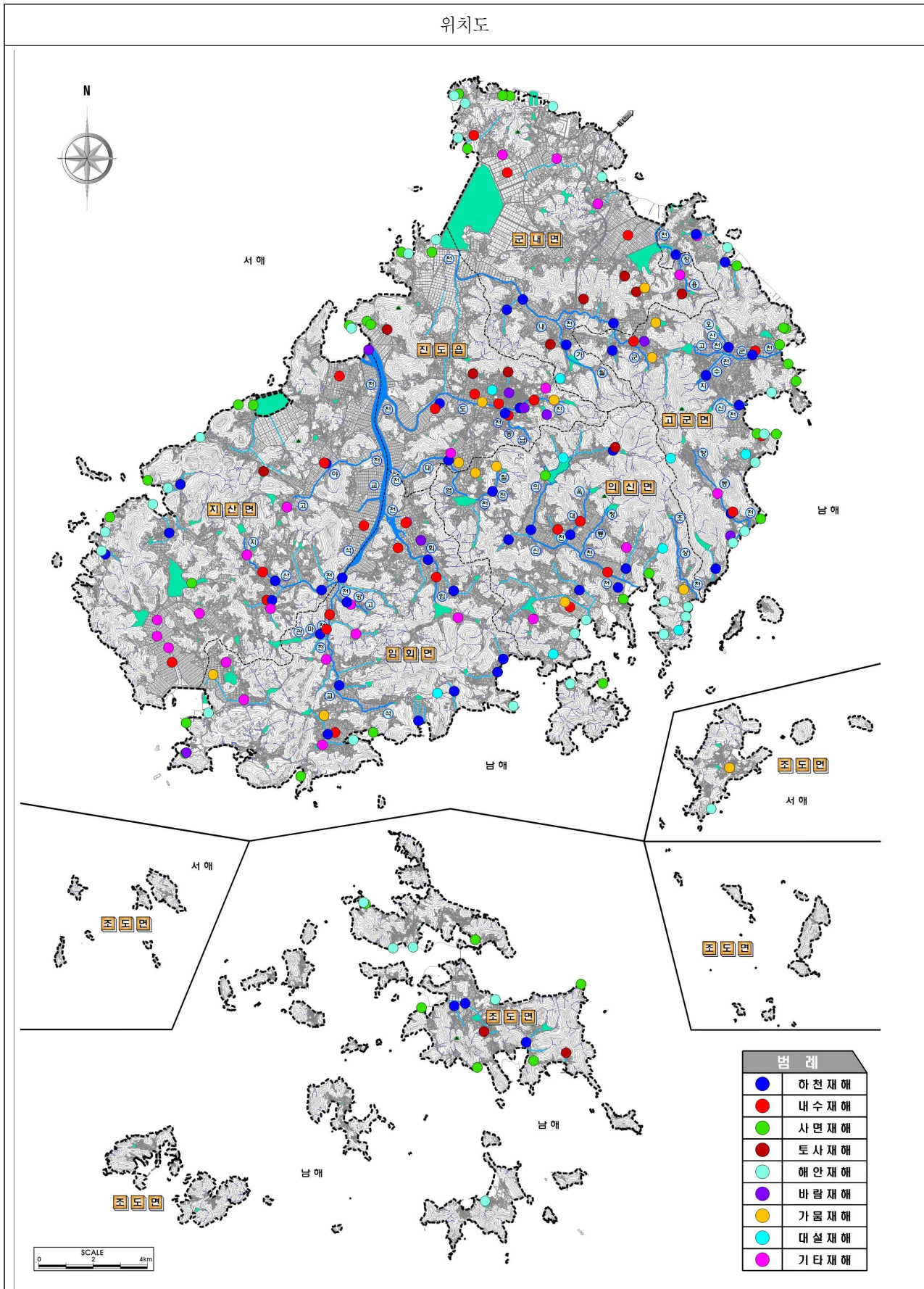
| 일반현황 | 자연재해현황 | 관련계획 및 방재시설 | 설문조사 | 기초분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현황 • 인문현황 •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발생 • 주요 자연재해 특성 및 원인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관련계획 • 토지이용관련계획 • 시설정비관련계획 • 국가단위관련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이력현황 • 자연재해 발생 위험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유형별 전지역단위 분석 |

나.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선정(안)

- 인명 피해가능성 우선 고려(사명, 부상, 실종, 고립)
- 사업규모 및 예상 피해규모, 과거 피해빈도 등 고려
- 10년 목표연도 동안 예산확보, 시행가능성 고려

| 재해유형 | 사업명 | 예비후보지 대상 | 예비후보지 | 후보지 | 위험지구 | 관리지구 |
|------|-----------------------------------|----------|-------|-----|------|------|
| 계 | 개소(사업비) | 1,775 | 930 | 215 | 98 | 117 |
| 하천재해 |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 328 | 87 | 47 | 25 | 22 |
| 내수재해 | •하수관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 146 | 65 | 28 | 12 | 16 |
| 사면재해 |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 243 | 228 | 37 | 9 | 28 |
| 토사재해 | •산사태취약지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 316 | 130 | 13 | 5 | 8 |
| 바람재해 | •비구조적 대책 수립 (시설물 기준풍속 제시 등) | 35 | 32 | 8 | - | 8 |
| 해안재해 | •연안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 331 | 169 | 35 | 17 | 18 |
| 가뭄재해 | •지표수보강 개발 •재해위험지구 정비 | 21 | 21 | 13 | 10 | 3 |
| 대설재해 | •설해피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 72 | 55 | 9 | 4 | 5 |
| 기타재해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 283 | 143 | 25 | 16 | 9 |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215개소)



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안)_총 사업비 : 5,494억원

○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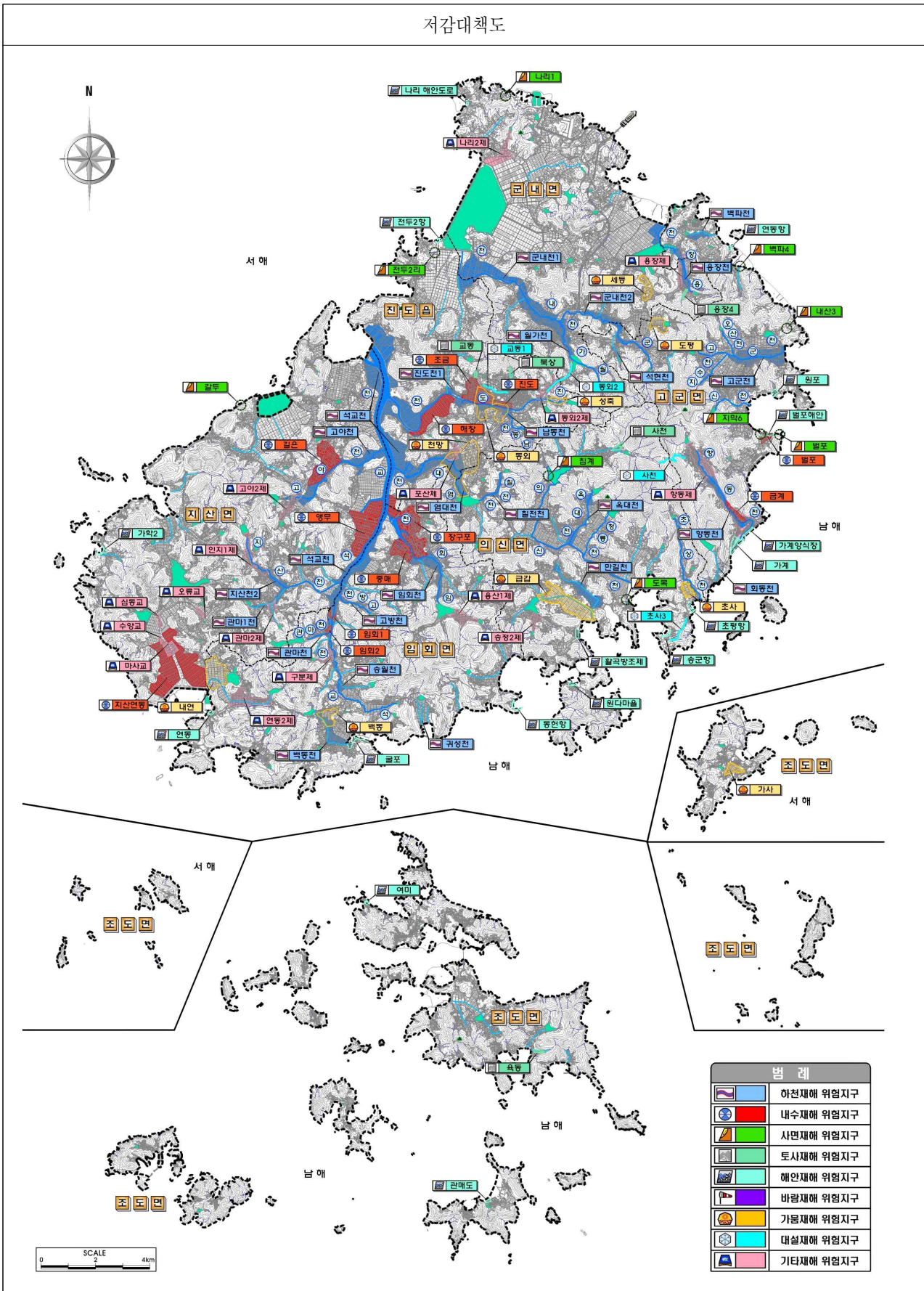
| 재해유형 | 개소수 | 사업내용 | 사업비(억원) |
|------|-----|--|---------|
| 하천재해 | 25 | ▶ 축제 및 보축, 고수호안 ▶ 교량 재가설, 보·낙차공 재가설 등 | 3,293 |
| 내수재해 | 12 | ▶ 배수펌프장 신설 및 증설 등 ▶ 우수관로 개량 | 1,654 |
| 사면재해 | 9 | ▶ 락볼트, 계단식 옹벽 등 | 40 |
| 토사재해 | 5 | ▶ 사방댐, 계류보전 등 | 22 |
| 해안재해 | 17 | ▶ 호안정비, 월류방지공 등 | 252 |
| 가뭄재해 | 10 | ▶ 저수지 준설, 둑병신설 등 | 47 |
| 대설재해 | 4 |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 16 |
| 기타재해 | 16 | ▶ 제체보강(그라우팅), 여수로 방수로 보강 등 | 170 |
| 합 계 | 98 | - | 5,494 |

○ 읍면별 위험지구 현황

| 재해유형 | 진도읍 | 군내면 | 고군면 | 의신면 | 임회면 | 지산면 | 조도면 | 총계(개소) | 사업비(억원) |
|------|-----|-----|-----|-----|-----|-----|-----|--------|---------|
| 하천재해 | 3 | 4 | 5 | 3 | 6 | 4 | - | 25 | 3,293 |
| 내수재해 | 3 | - | 2 | - | 4 | 3 | - | 12 | 1,654 |
| 사면재해 | 1 | 1 | 4 | 2 | - | 1 | - | 9 | 40 |
| 토사재해 | 2 | 1 | - | 1 | - | - | 1 | 5 | 22 |
| 해안재해 | 1 | 1 | 5 | 4 | 3 | 1 | 2 | 17 | 252 |
| 가뭄재해 | 2 | 1 | 1 | 3 | 2 | - | 1 | 10 | 47 |
| 대설재해 | 2 | - | - | 2 | - | - | - | 4 | 16 |
| 기타재해 | 2 | 2 | 1 | 1 | 3 | 7 | - | 16 | 170 |
| 계 | 16 | 10 | 18 | 16 | 18 | 16 | 4 | 98 | 5,494 |

○ 자연재해 위험지구(98개소)

저감대책도



| 범례 | |
|----|-----------|
| | 하천재해 위험지구 |
| | 내수재해 위험지구 |
| | 사면재해 위험지구 |
| | 토사재해 위험지구 |
| | 해안재해 위험지구 |
| | 바람재해 위험지구 |
| | 가뭄재해 위험지구 |
| | 대설재해 위험지구 |
| | 기타재해 위험지구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 |
|----------|---------|
| 의안 번호 | 2022-76 |
|----------|---------|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 사방사업 편입토지 매입

3. 세부 내역 : 첨부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부

2022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 구 분 | | 상 반 기 | | | 하 반 기 | | | 합 계 | | | 비 고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
| 취 득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 | 7 | 5,728 | 37,401 | 7 | 5,728 | 37,401 | |
| | 1. 매 입 | 토지 건물 기타 | | | | 7 | 5,728 | 37,401 | 7 | 5,728 | 37,401 | |
| | 2. 교환으로 취득 |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3. 기타취득 |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처 분 | 계 |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4. 매 각 |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5. 양 여 |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6. 교환으로 처분 |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 |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202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 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 | 전 | 임회면 용호리 439-1 | 704 | 2,725 | 2022. 9.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 |
| | 전 | 임회면 용호리 438-1 | 635 | 2,477 | | | |
| | 전 | 임회면 용호리 437-1 | 949 | 4,926 | | | |
| | 전 | 임회면 용호리 440-1 | 473 | 2,337 | | | |
| | 전 | 임회면 용호리 1064-2 | 974 | 4,812 | | | |
| 3 | 답 | 고군면 고성리 777 | 1,590 | 15,026 | 2022. 9. | 사방사업 추진 | |
| | 답 | 의신면 칠전리 971 | 403 | 5,098 | | | |